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 법무법인 대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26 원당빌딩 2층 Tel 02.525.5438 E-mail thomasis@naver.com

### 답변서

2018. 6. 7.

수신 / 유준상(대한요트협회 회장 당선인)

발신 / 법무법인 대양(담당 변호사 유인상)

제목 / 대한요트협회 회장 당선인의 연임 제한에 따른 정관규정 위반 여부

#### 1. 질문 요지

질문자 유준상은 2009년부터 대한물리경기연맹 제14대, 제15대 회장을 연임하고 2016년 8월 28일, 그 임기를 끝냈습니다. 이후 대한체육협회에 소속된 어떤 경기 종목의 임원도 맡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5월 17일에 실시된 대한요트협회 임원 선거에 나서 민주적인 공정한 절차를 통해 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한물리경기연맹 회장 재직 경력이 대한요트협회 정관(제25조 소정의 연임제한 규정에 해당돼, 대한요트협회 회장 취임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를 질의했습니다.

#### 2. 답변

대한요트협회 정관을 엄밀히 살펴보고, 그 정관을 질문자의 경우에 적용해볼 때 전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 유사한 사례에 따른 법제처의 해석,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질문자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어 대한요트협회 회장 당선은 유효하고, 따라서 회장 직무 수행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 3. 답변 근거(요약)

##### 가. 대한요트협회 정관

대한요트협회 정관 제25조 제1항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시 다른 회원 종목 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된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정관 해석상의 혼란을 막고자 대한요트협회는 2017년 6월 26일자로 위 정관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명기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 유준상은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에서 물러난 후 2년이 지나 다른 경기 종목 단체인 대한요트협회 회장에 당선됐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 나. 법제처 유권해석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12월 7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1차 연임을 한 자가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은 경우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도서관법 제13조 6항)'를 법제처에 문의했습니다.

법제처의 답변(법제처 15-0798)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법 제1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은 한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습니다."

#### 다. 대법원 판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 81035 판결례 참조).

#### 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연임'과 '중임' 낱말 해석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고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마. '중임' 제한 입법례

한편 임기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다시 위촉·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임'과는 별개로 '중임'이란 낱말을 적용해 중임제한 규정을 둔 입법례가 있습니다. 즉 주택법 시행령(제50조 제8항-동별대표자의 임기), 국세기본법(제67조 제5항-조세심판관의 임기), 교육공무원법(제29조 제3항-교장의 임기) 등이 그렇습니다.

### 4. 결론

이렇듯 '연임'과 '중임'의 낱말 뜻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대한요트협회 정관, 대법원 판례, 법제처 해석, 그 밖에 일반적인 상식과 관례에 비추어볼 때 질문자의 대한요트협회 회장 당선과 회장직 수행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게 법무법인 대양과 담당 변호사의 결론입니다.

2018년 6월 7일

법무법인 대양  
변호사 유인성



〈끝〉